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등록번호	20160742	홈페이지
	최초등록일	2016-08-02	www.yogurtman.co.kr
	최종등록일	2025-05-23	

요 거 트 맨

정보공개서

“컴퍼니맨 (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 조 제 1 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컴퍼니맨 (주)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일로 24 길 38, 205 호(성수동 2 가)

T. 02-553-5760

[담당부서: 가맹사업부 02-553-5760]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2. 특수관계인의 일반정보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여부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 및 가맹사업의 내용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7. 가맹본부의 임직원 수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사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 가맹사업 연혁
3. 가맹사업 업종
4.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5. 바로 전 3 개년도 말 가맹점수 변동 현황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기타 가맹사업 현황
7.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10. 광고·판촉지출 내역
11. 가맹금 예치기관
12.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내역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3. 형(刑)의 선고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2. 영업 중의 부담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4. 영업지역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연장, 종료 및 수정, 해지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0.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VI.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2. 분쟁 해결 절차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3. 경영활동 자문
4. 신용 제공 등 내역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내역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4. 교육·훈련 불참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직영점 목록 및 주소
2.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3.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 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 가지 필수사항을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 보 공 개 사 항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정보

당사의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에 관한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 업 표 지	주 소		
컴퍼니맨 (주)	요거트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24 길 38, 205 호(성수동 2 가)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 등록일	대표	전화번호 및 팩스
	2014.06.09	2014.06.09	배태진	T. 02-553-5760
	법인 등록번호	110111-5433646	사업자 등록번호	206-86-9195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 계	이 름	영 업 표 지	주 소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사용인	대표 배태진 이사 전영석	요거트맨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24길 38, 205호(성수동2가)	
			배태진	T. 02-553-5760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서 바로 전 3 개년간 다른 기업과 인수 합병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 된 사실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사용하게 될 영업표지에 관한 사항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요거트맨	없 음
상 호	요거트맨 OO 점	없 음
상표 (서비스표)		등록번호(일자) 4103176260000 (2015.03.30)
		등록번호(일자) 4103176270000(201 5.03.30)
그 밖의 영업표지		

5. 가맹본부의 재무현황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현황 요약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 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연도	총자산	총부채	총자본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22	126,415	69,136	57,279	1,210,635	-52,516	-16,909
2023	89,572	29,979	59,592	800,415	-46,324	2,313
2024	69,050	51,461	17,589	539,336	-42,042	-42,003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당사의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과 관련하여 당사는 가맹사업(직영사업포함) 외에 도소매업(식음료)을 영위하고 있으며 상기 1)의 매출액 중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관련 매출액 현황은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여부	이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체명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배태진	대표	2021.06.17~ 현재	컴퍼니맨 (주)	사업총괄
	전영석	이사	2020.03.17~ 현재	컴퍼니맨 (주)	사업총괄

7. 가맹본부의 임직원수

당사의 정보공개서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 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 년 12 월 31 일	2	0	2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정보공개 바로 전 3 년 동안 『요거트맨』 가맹사업 외의 동일 하거나 비슷한 가맹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귀하가 당사의 『요거트맨』 가맹점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귀하에게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관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 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사용기간)
<서비스표> 	간판, 인테리어 시설물 및 판촉, 홍보	출원일 2014.07.01 등록일 2015.03.30	출원번호 4120140026212 등록번호 4103176260000	컴퍼니 맨 (주)	2025.03.30
<서비스표> 	간판, 인테리어 시설물 및 판촉, 홍보	출원일 2014.07.01 등록일 2015.03.30	출원번호 4120140026213 등록번호 4103176270000	컴퍼니 맨 (주)	2025.03.30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가맹사업 시작일: 2017년 1월 15일

- 『요거트맨』 직영사업 시작일은 2015년 4월 20일입니다.

2. 가맹사업 연혁

『요거트맨』에 대한 가맹사업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컴퍼니맨 (주)	요거트맨	배태진	15.04.20 ~ 20.03.16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89길 35, 1층 105호(청담동, 청담범 신칼릭스빌 2차)
컴퍼니맨 (주)	요거트맨	전영석	20.03.17 ~ 21.06.16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 8가길 63, 1층 상가(중곡동)
컴퍼니맨 (주)	요거트맨	배태진	21.06.17 ~ 현재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 24길 38, 205호(성수동 2가)

- 상기 가맹사업 경영기간의 시작일은 당사의 『요거트맨』 직영사업 시작일을 기준으로 표기 하였습니다

3. 가맹사업 업종

『요거트맨』에 대한 가맹사업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요거트맨	음료(커피 외)	꿀바나나, 스무디

4. 바로 전 3개년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요거트맨』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가맹 점수	직영 점수
전체	13	13	0	9	9	0	7	7	0
서울	10	10	-	8	8	-	6	6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2	2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1	1	-	1	1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개년도 말 「요거트맨」의 가맹점수 변동 현황

정보공개 바로 전 3개 사업연도 말 가맹점수 변동현황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11	3	0	1	4	13
2023	13	0	0	4	1	9
2024	9	0	0	2	0	7

6. 기타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요거트맨』 가맹사업 외 현재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기타 가맹사업은 없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지역별 연간평균매출액 및 그 산정기준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올린 연간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되며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	가맹 점수	2023년 연평균 매출액(단위: 천원, VAT미포함)						비고
		연평균 매출액		상한 매출액		하한 매출액		
		연평균	3.3㎡ 당	상한	3.3㎡ 당	하한	3.3㎡ 당	
전체	7	255,019	27,047	900,013	60,000	15,100	2,157	산출:7개
서울	6	257,520	26,640	900,013	60,000	15,100	2,157	산출:6개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	-	-	-	-	-	-	-
경기	1	-	-	-	-	-	-	5곳미만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	-	-	-	-	-	-	-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별 POS (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가맹점 운영 개월수가 6 개월 미만인 경우와 매출액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는 해당 자료를 1 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 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추정근거 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3 항 ·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 조 제 1 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요거트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7 개	1,459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현황

당사는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의 『요거트맨』 가맹사업 관련 연간광고 및 판촉비 내역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비공개	2024.1~12	118	비공개	-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기관 - 우리은행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우리은행	역천동지점	서울 은평구 연서로 134 신성빌딩	1599-5000 02-388-338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우리은행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시어 작성한 예치신청서와 함께 예치가맹금을 은행이 제공하는 “에스크로계좌”를 발급받아 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 폰뱅킹 등을 이용하여 예치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우리은행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bank.com)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1599-5000)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 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 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피해보상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보상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당사의 운영방침이 변경된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 및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바로 전 3 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요거트맨』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비용을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가맹비	₩16,500	계약 체결일	영업 개시 이전까지 계약 해지	가맹점 모집을 위 하여 소요되는 소 멸성비용	반환시 당사에 서 정한 위약 금을 공제
교육비	₩5,500	계약 체결일	교육 개시 이전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개점전 교육비

2) 보증금, 담보목적물 등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 보증금	₩3,000	계약 체결일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및 물품대금 미지급 등	직전년도 전체 가맹점사업 자의 1 회 평균 상품 등의 대금(원·부재료 대금 포함) 의 3 배 이내

- 보증금은 귀하가 당사와의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담
보기간 동안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보증금의 반환 시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잔존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반환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예치가맹금액
합계	₩25,000
가맹비	₩16,500
교육비	₩5,500
개점홍보비	해당 없음
이행보증금	₩3,000 (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 및 금전 지급방법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 양수인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판, 인테리어 등 기타 비용 (기준: 33 ㎡ (10 평) / 단위: 천원, VAT 포함)					
구분	지급대상	총 금 액	3.3 ㎡당 금 액	지급 기한	반환 조건

[총 계]	-	[47,300]	-	-	-
간판	업체자율	3,300	-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 와 협의
인테리어 (실내)	업체자율	22,000	2,200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 와 협의
요거트 설비	업체자율 (요청시 협력업체)	16,500	1,650	요청시 계약시 협의결정	설비발주 전계약해 지시
요거트 집기	업체자율 (요청시 가맹본부)	2,200	-	요청시 계약시 협의결정	물품발주 전계약해 지시
초도물품	별첨 2. 참조	3,300	-	계약시 협의결정	물품발주 전계약해 지시
POS 설비	업체자율	렌탈형 (월사용료有)	-	설비업체와 협의결정	설비업체 와 협의

- 위 표의 금액은 매장규모 및 물가인상, 디자인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간판은 매장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3.3㎡ 당 가격은 대략 209만원(부가세포함)으로 책정되었으며 매장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집니다.
- 귀하는 인테리어에 관하여 귀하가 직접 시공할 수 있으나, 이의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귀하는 당사가 파견하는 직원의 감리(관리감독)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당사에 3.3㎡당 33만원(부가세포함)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각종 인허가, 인터넷 및 전화개설, 기존 시설물 철거 및 정화조공사, 전면유리 및 샷시공사, 어닝, 소방공사, 상하수도공사, 냉난방공사, 가스공사, 전기승압공사, 외부닥트공사, 화장실 등은 별도로 실비를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 초도물품과 관련하여 초도 발주물량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업종변경의 경우, 별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및 당사 금전 지급 후 해약 시 위약금

귀하가 당사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둘 중 빠른 시점) 일방적인 변심 등 귀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가맹점 개정 전 해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지급한 금액 중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위약금 규정에 따라 상계처리 후 반환됩니다.

해약 요청 일자	위약금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내	100 만원
계약 체결 또는 금전 지급 후 24 시간 이후 10 일 이내	200 만원
계약 체결 후 10 일 이후 가맹점 오픈 이전	300 만원
개정 관련 발생하는 인테리어, 설비공사비용 등	실제 발생비용 전액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입지 선정의 기준
가맹점사업자	1)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점포의 입지를 선정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입지선정에 당사는 해당 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시장의 특성, 주요한 근린시설, 업종특성에 따른 매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점포의 실사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권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있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 20 세 이상일 것 위생교육 수료자, 보건증 소지자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 18 세 이상일 것 보건증 소지자일 것

- 귀하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가맹점운영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관할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요거트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물품내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으며 거래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9)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 오픈 이후 지급해야 하는 정기 또는 부 정기 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 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 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월 [220]	익월 5 일	해당사항 없음	소멸성 비용	전월에 대한 대가
영업표지변경에 따른	업체자율	교체보수 필요시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시공업체와 협의	부득이한 경우 변경

간판변경비						
점포환경 개선	업체자율	가맹본부 분 담비용을 제 외한 나머지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중 1.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이후 교육비	가맹본부	기본교육 무 료, 특수사항 실비	교육실시 7 일전까 지	교육실시 3 일전 취소	교육후 반 환되지 않음	수시교육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주와 협의 산 정	교육실시 7 일전까 지	교육 실 시 3 일 전 취소	교육후 반 환되지 않음	특별교육
광고,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9-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실시후 반환불가	-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	금전지급 의무 의 지급기한 경과시 부담.
POS 월사용료	업체자율	[11~55]	지정업체와 협의	해당사항 없음	사용 대가 지급	사용량에 따라 변동

- 광고판촉 분담비에 관하여는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중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분담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환경개선과 관련한 가맹본부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VII.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중 1. 점포환경 개선시 비용지원 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 기준의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정보공개 바로 전 사업연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 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이 경우 차액가맹금에는 물류비용과 인건비, 개발비, 홍보비, 판촉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점포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부정기적으로 당사의 직원을 통하여 당사가 정한 규정 이외의 품목 취급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장의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가맹점 영업과 관련하여 영업 장부와 회계자료를 성실히 작성·유지하여야 하며, 당사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과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당사가 정보공개서 작성을 위해 귀하의 연 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양수한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으면 기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중 이행 의무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해지와 함께 당사의 귀책 정도에 따라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당사가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 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이행기간,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금 반환 청구는 최초계약에 한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가맹점운영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완전한 계약기간의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증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와 『요거트맨』 가맹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사로부터 부여받았던 가맹점운영권이 만료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① 당사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은 『요거트맨』 가맹사업과 관련된 영업표지 등의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던 상호, 간판, 기타 표시물 등을 계약해지 및 종료 후 10일 이내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점운영에 관한 관계서류와 지원품목 등을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 이때 철거 비용은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가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외에는 귀하께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전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당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의 공급물품의 특성상 유통기간 및 부패, 오·훼손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최근 2개월 이내에 공급된 상품으로서 재판매가 가능한 완전물에 한하여 당사에 반품요구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당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요거트맨』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개점 이후에도 추가품목 구입 시 강제/권장 기준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거래 상대방을 추가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요거트맨』 가맹사업과 관련한 원부재료 중 강제품목은 가맹본부(협력업체 포함)에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나) 주요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순번	품목(단위)	공급가격		구분
		상한	하한	
1	“별첨 2. 주요품목” 참조 요망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요거트맨』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거래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내역

1)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로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정보공개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요거트맨』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나 주선의 대가를 수취한 사실이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이 강제하는 특정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요거트맨』 가맹사업에 있어 특수관계인에 의해 거래를 강제하는 특정거래 상대방이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가맹본부 제공상품 일체 - 하단 3) “상품품목 및 권장가격” 참조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2 회 위반: 서면시정요구 후 가맹점운영권제한 3 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당사로부터 승인 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 귀하가 승인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요거트맨”의 타 가맹점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모든 물품	거래상대방별로 왼쪽에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 회 위반: 구두 경고	당사로부터 승인을 받 은 경우에 는 제외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			2 회 위반: 서면 시정 요구 후 가 맹점운영권 제한 3 회 위반: 계약 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시장상황이나 소비자의 동향 또는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소비자 판매가를 정하여 권장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토픽 그릭요거트	4,500 ~ 11,000	서면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 통지, 홈페 이지 공지 등	2025 년 4 월 기준 (계절 및 지역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 음)
토픽 요거트 아이스크림	4,500 ~ 11,000		
마시는 요거트	4,900		
커피류	1,900 ~ 4,900		
음료류	1,900 ~ 4,900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권장 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4. 영업지역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으며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요거트 전문점	요거트맨	해당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상권에 따라 상이하나 영업거점 주소지로부터 동선거리 500 m 의 범위를 원칙으로 함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 별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영업지역내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상가, 공항, 호텔, 종합병원 등은 특수상권으로서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본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4 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조정통보→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지 →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①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 ②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 ③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요거트맨』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요거트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4	100%	0%	0%	4%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가맹점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비중)
2024	100%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 및 수정, 해지

1) 가맹계약의 기간

『요거트맨』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갱신시에는 1 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 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 년간 주어집니다. 다만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재계약 또는 계약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 (계약만료일: D-day)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 +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 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 (가맹본부가 계약 변경 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 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3) 계약 갱신 거절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가맹점사업자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조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7조 2항 각호1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에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종료,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가. 당사는 아래와 같은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 후 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시정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점포의 규모, 대표자 등의 가맹점의 표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3 조 3 항	25 조 1 항 각호 및 31 조 1 항 2 호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허용한 영업표지의 사용범위 외에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조 3 항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보유한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양도한 경우	4 조 4 항	
가맹점사업자가 로열티 및 공급품 대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15 조	
가맹점사업자가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7 조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제 3 자의 명의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8 조	
가맹점사업자가 관리감독 기준에 의한 시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 경우.	20 조 1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메뉴를 변경·추가하는 경우	21 조 2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에 대하여 가맹점 판매 용도 이외로 사용할 경우	22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승인받지 않고서 요구 품목을 자점매입 하거나 사입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를 2 회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23 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승인 없이 가맹점 설비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27 조 6 항
가맹점사업자가 회계자료 및 보고사항 등에 관하여 허위로 통지하거나 보고하는 경우	28 조
가맹점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되는 광고·판촉의 광고·판촉비 분담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29 조, 30 조
가맹점사업자가 사전 승인 없이 양도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나, 사전 승인 없이 점포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35 조 3 항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불할 대금지급이 지급기일까지 미이행된 경우	25 조 15
기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가맹본부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25 조 16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3 개월 이상 개점이 지연되거나 최초 개설 비용의 지급을 지키지 않는 경우	31 조 1 항 2 호

나. 당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절차 없이 즉시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1조 4항 각호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	

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당사 및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1 조 3 항 각호 1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당사에 통지하고 2 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당사가 가맹점운영에 필요한 공급품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	31조 2항 각호 1

마. 그밖에 가맹점사업자가 위에 해당하는 해지사유 이외에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 개월 전에 해지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요청 후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합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 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 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15 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등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정보공개서 제 공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체결 (1개월 이내)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 료	문의: 02-553- 5760

- **양수인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당사에게 교육비와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비와 교육비, 이행보
증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
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

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 (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상속인 서면 통지시 가능	모든 권리 의무	서면통지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내의 권리의무	서면통지 및 승인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위탁	불가능	-	-	가맹본부외 제3자의 위탁 경영불가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 기간 중에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당사의 허락 없이 『요거트맨』
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업제한기간	경업금지되는 업종	경업제한지역	경업허가절차
계약기간 중	『요거트맨』과 동일한 컨셉이나 노하우를 사용하는 요거트 전문점	국내 전지역	해당사항없음 (문의 02-553- 5760)

- 당사는 귀하가 가맹계약 종료 후 당사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 자의 명의로 “부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요거트맨』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요거트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07:00 ~ 22:00 (15시간, 협의가능)	365일 연중무휴 (단, 명절 제외)	문의: 02-553-576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 조 제 10 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 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형태의 제한에 있어서 가맹점 및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2 명 이상 [49.5㎡ 기준]	직접 근무 권장	제한 없음	가맹점사업자가 매장에 근무하도록 권장하지만 필수적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음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방문 및 유.무선 등을 통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수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의 조건과 비용 부담 기준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요거트맨』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성격	부 담 비 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브랜드 및 상품 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측 50%(1/N)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 담액 제시 → 가맹점 의 행사 참여 결정 → 광고비 납부	1. 대중매체광고 등 광고에 따라 필 요시 분담 절차는 변동될 수 있음. 2. 가맹점사업자비 용부담시는 50%이 상 동의시 시행
	브랜드 및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50%	가맹점사업자 측 50%(1/N)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100%	없음		
판촉 행사	전체행사	행사에 따라 차등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측간 균등분담 원칙)		상기와 동일	가맹점사업자 70% 이상 동의시또는 동 의점주 대상시행
	개별행사	가맹점 100%부담		해당 없음	가맹점단독 판촉행사

- 지역광고일 경우에는 해당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영업지역 내 개별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절차는 없으나 본사의 승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사업연도 종료 후 3 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의 비용으로 자기의 영업지역 내에서 당사와 별개로 광고, 판촉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판촉활동 등을 위한 팜플렛, 카다로그, 쿠폰 등의 내용은 브랜드의 통일성 및 이미지 유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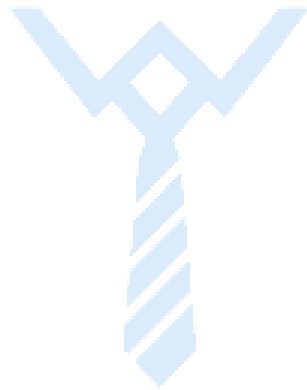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및 손해배상에 관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위반이나, 귀책사유 없는 일방적인 중도해지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입은 자는 상대방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책임 있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가맹점사업자가 본 가맹계약의 제17조(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나, 제18 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당사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위약금 십이천만원 (₩20,000,000원)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③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의 제23조(자점매입)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강제)품목을 자점매입(사입)하는 경우, 당사는 “자점매입(사입)한 금액의 3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④ 가맹점사업자가 계약해지 및 종료시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당 10만원의 지체 배상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급격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가맹점사업자가 제 3자에 대해 책임져야 할 손해배상을 당사가 지불한 경우에는,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⑦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본 계약상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안에 국한되며, 다른 사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VI.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가맹점 오픈 절차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 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	45 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중 1.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02-553-5760) - 홈페이지 및 직접방문	D-45	
1 차 상담	- 전화 상담 및 본사방문 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 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D-44	
점포 개발	- 점포입지 선정 - 점포개발 착수 - 상권분석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최종 개설 협의	D-30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예치	- 가맹 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D-29	
점포실측/설계	- 매장 내.외부 중심선 기준 실측 / 평수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D-28	
도면 작성 및 인테리어공사	- 인테리어협의 / 별도 / 추가공사 - 인테리어 공사, 설비공사 실시	D-27~2	
교육	- 교육(개점전 교육)	D-5~2	
소품 및 초도물품	- 기자재 및 소품 설치 - 초도물품공급	D-1~2	
오픈	- 영업 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22 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다만, 상호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Ⅶ.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및 시행령 제 13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세부내역
점포환경 개선 사유	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단, 노후화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 시점은 최근 개선일로부터 최소 5 년으로 한다.) ②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 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비용 항목	① 간판교체 비용 ② 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 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비용 비율	①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 환경개선: 20% ②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 환경개선: 40%
지급절차	①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②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 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 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 (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비고	집기·장비 교체비용은 가맹본부에서 비용분담을 하지 않음

-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2 조의 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신규개점시 판촉 및 인력지원	요거트 무료시음행사 및 인력지원	가맹점 신규오픈매장에 한하여 지원	오픈일 전후 최대 5일간	시음용 재료 및 시음컵 등 판촉 및 인력지원에 따른 비용 전액 당사 부담	지원 인력 1~2명 (매장규모 별차등)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정책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 부담	비고
가맹본부 필요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경영활성화나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맹점을 방문하거나 유선상으로 관련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요청시	계약이행, 표준화, 판촉, 경영상 발생문제 등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협의 후 개별계약체결 → 경영지도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함을 원칙으로 함.	가맹점 부담	문의: 02-553-5760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에 의한 경영지도는 개별 요청사항에 따라 양 당사자의 협의 후 개별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문의 여부, 내용,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요거트맨』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자금지원이나 매출부진에 따른 경영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1) 개점 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요거트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메뉴교육	꿀그레놀라, 꿀바나나, 애플파이, 오드리헵번, 망고스무디 등 메뉴교육, 주방관리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서비스 및 운영 교육	접객방법, 마인드 교육, 위생교육, 매장운영 등	실습교육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2) 개점 후 교육 프로그램

당사는 효율적인 『요거트맨』 가맹점 운영·관리에 필요한 제반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점 이후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교육시간	비고
수시교육	신메뉴 및 필요시 전달교육등	실습교육	1 일(3~6h)	신메뉴출시 및 필요 시
특별교육	점주의 요청에 의한 특별교육	실습 및 강의교육	1 일(3~6h)	가맹점주 요청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요거트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부가세 포함)	비고
개점 전 교육	3 일 (24h)	550 만원	최초 계약시 이수 (1 일 8 시간 교육기준)
수시 교육	1 일(2~4h)	기본이론교육무료 실비 발생시 청구	신메뉴 및 필요시등
특별 교육	1 일(2~4h)	개별교육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산정	점주요청에 의한 교육

3.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가맹점사업자와 종업원(관리자 등) 1 인입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당사와 사전협의 한 경우에는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와 종업원 1 인 이외의 다른 직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불하고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가맹점사업자 및 매장근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점 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개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점 이후 전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에 교육 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가맹점운영권 제한 사유 및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 목록 및 주소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 목록 및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NO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해당 없음

2.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평균 영업기간 (단위: 년, 개월)
2024	해당 없음

3. 바로 전 사업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영업중인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2024	해당 없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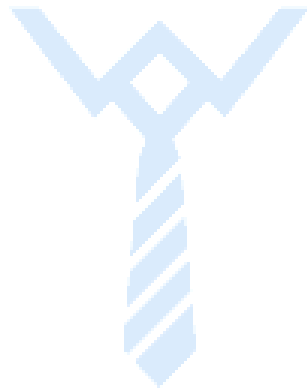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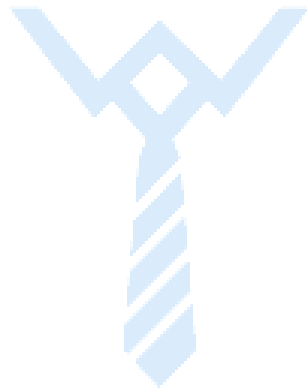
2024 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2022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 2. 강제/권장 품목 및 주요품목 공급가격

1. 강제/권장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상기 품목 중 필수강제품목은 반드시 당사(지정업체포함)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사업금지 품목이며 권장품목은 귀하의 의사에 따라 직접구매 내지 희망시 당사(지정업체포함)에서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하가 권장품목을 직접 조달하는 경우, 당사가 요구하는 디자인, 규격, 사양, 품질 등에 맞게 구매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사용 전 반드시 당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직전연도 주요품목 공급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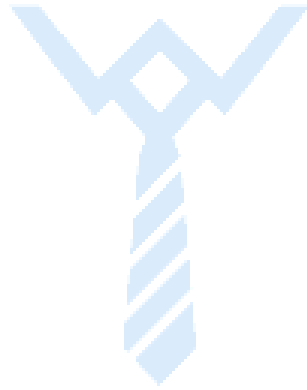
(단위:원, 부가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 3. 주요설비 강제/권장 품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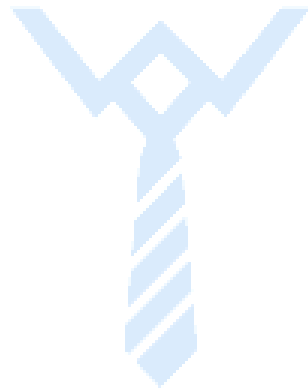
-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별첨 4. 인근 가맹점 사업자 현황

2024 년말 요거트맨 가맹점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수령확인서 - 가맹희망자용〉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제공 받은 사실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하단 자필기재요망]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 . .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 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인) 또는 서명

〈수령확인서 - 가맹본부용〉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수령일시	20 년 월 일 시	수령장소	
제공 받은 사실	“상기 본인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하단 자필 기재요망]		

상기 기재사항들은 전부 가맹희망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만 유효합니다.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 . .

정보공개서 주요목차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별첨: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10 개 점포 가맹점사업자 현황

상기 본인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7 조의 규정에 의거 당
가맹사업의 정보공개서를 정히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맹 본 부 :

(인) 또는 서명

정보공개서 수령자:

(인) 또는 서명